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1800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

[redacted]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046,490원의 부과처분 중 102,168,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일반무신고가산세 21,209,290원의 부과처분 중 20,433,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70원의 부과처분 중 24,551,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0,604,640원의 부과처분 중 10,216,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0원의 부과처분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2,45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5. 28.에 한 취득세 106,046,49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21,209,2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70원, 농어촌특별세 10,604,6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0원, 취득세 1,184,94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236,9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4,740원, ②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8. 10.에 한 취득세 15,330,46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3,066,0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24,240원, 농어촌특별세 1,533,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2,4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화공약품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의 대표자 사내이사 C와 원고의 지인 D은 B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등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에게 B에 투자하여 함께 경영을 정상화시켜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 C, D, 원고는 E을 비롯한 B의 채권자 은행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B의 채권자 은행들에게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E은 2015. 11. 5.부터 2015. 11. 9.까지 B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관한 실사를 하였다.

다. 원고, D, C, F은 2015. 11. 10. B에 대한 투자의향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투자자)

원고, D, C, F

제2조(사업영역)

1) B의 기존 사업: [redacted]시 G 소재 저장창고, 용제류 판매 및 해외 법인

2) 아크릴 계열(이하 AA): D이 추진 중인 AA의 수출입 및 해외 법인

제4조(투자비 납입금액 및 지분구조)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현금(원)	기존Biz/기여도 인정금액(원)	합계(원)	
원고	700,000,000	-	700,000,000	41.17
D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	29.41
C	200,000,000	200,000,000	400,000,000	23.52
F	100,000,000	-	100,000,000	5.9
합계	1,250,000,000	450,000,000	1,700,000,000	100

제5조(일정계획)

1) 1차 투자금 납입(30%): 2015. 11. 5.(원고 명의의 신규 개설 계좌에 아래 금액을 입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원고	D	C	F	합계
200,000,000원	80,000,000원	60,000,000원	60,000,000원	400,000,000원

2) 채권단과 회생계획 협의: 2015. 11. 5.

3) 투자대상 실사 완료: 2015. 11. 9.

4)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2015. 11. 16.

5) 2차 중도금 납입 입금(30%): 2015. 11. 19.

6) 3차 잔금 납입 입금(40%): 2015. 11. 25.

라. 그 후 F이 B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원고, D, H, C는 2015. 12. 24. B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D을, '병'은 H을, '정'은 C를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투자 당사자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형태로의 공동투자회사의 설립, 소유 및 운영을 규정함에 있고 자금경색에 의한 경영위기에 처한 B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비율 및 방법)

1. 신규 투자자들은 각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현금과 가치에 대해 기 합의된 현물을 투자하고 투자한 비율만큼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다.
2. 취득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인 1주당 회계법인I의 주식가액 평가금액인 4,850원을 기준으로 각자 투자한 금액에 대항하는 주식수를 취득한다. 공동투자자들이 투자하기로 약정, 합의한 금액과 취득할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갑: 현금 9억 원을 투자하여 185,567주(47.42%)를 취득함
- 을: 현금 3억 5,000만 원과 현물 중국법인(J)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23,711주(31.61%)를 취득하며 B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점에 중국법인 J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함
- 병: 현금 2억 원을 투자하여 41,237주(10.54%)를 취득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 정: 기존 B의 영업권 및 제반 자산가치에 대해 감자 후 잔존 주식을 현물로 투자하며 감자 후 주식수인 40,800주(10.42%)를 투자하며 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3. 투자의 방법은 B의 전체 발행주식 120,000주 중 정의 소유주식 119,500주 중 40,800주를 남기고 K 명의의 차명주식 170주를 포함한 잔여주식 전체를 소각, 감자한 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수만큼 유상증자의 신주를 발행, 교부한다.
4. 을의 현금투자 약정금액 중 1억 원을 제외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은 갑 명의의 통장으로 이미 완납되었으며, 동 통장을 경유해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을의 미납 투자금 1억 원은 2015. 12. 31. 까지 동일한 통장으로 납입하기로 한다.

- 갑의 개인통장: 원고 E L

5.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5. 12. 17.자로 M 명의의 전환사채 3억 원이 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전환사채 계약서에 따라 이행을 확약하며, 필요 시 전환사채의 추가발행에 동의한다.

마. 2015. 12. 30. B의 발행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120,000주에서 보통주식 40,800주로, 자본금이 6억 원(= 액면가 5,000원/주 × 120,000주)에서 2억 400만 원(= 액면가 5,000원/주 × 40,800주)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C가 위 40,800주 전체를 소유(자신의 명의로 40,630주, K의 명의를 빌려 170주)하고 있었다.

바. D은 중국 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영업권에 관한 감정평가 및 세무처리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J에 대한 지분을 현물출자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 11. B의 발행주식 총수가 330,800주, 자본금이 16억 5,400만 원(= 액면가 5,000원/주 × 330,800주)으로 변경되면서 원고, D, H, C가 아래 표와 같이 B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C가 B의 대표자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D, C가 각 B의 사내이사로, H이 B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016. 1. 18. B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위와 같은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 변경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투자금액(원)	소유주식 수	지분율(%)
원고	900,000,000	180,000[1]	54.41
D	350,000,000	70,000	21.16
H	200,000,000	40,000	12.09
C	204,000,000	40,800[2]	12.33
합계	1,654,000,000	330,800	100.00

사. E, B, 원고는 2016. 1. B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은행'은 E을, '회사'는 B을, '경영주'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2조(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은행, 회사, 경영주는 '별지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확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회사를 대리하여 매각대상 자산을 처분할 수 있고, 회사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 약정체결과 동시에 은행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는 동 매각대상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위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은행 사전 승인 사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은행에 사전 통보하고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생절차 신청 또는 파산 신청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신청

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K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170주를 K으로부터 양수하여 40,800주(= 40,630주 + 170주) 모두 C의 명의로 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3. 기본재산의 매각 계약, 합병, 영업양수도 계약

제5조(자료제출 의무 및 점검)

1. 회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본 항 제①호 관련자료는 매 분기 말의 익월 15일 이내, 제②호 관련자료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기별 제출자료

- 수주현황, 매출 및 매출채권 회수 내역
- 매입 및 매입채무 결제 내역
- 자산매각 협상 진행 현황

② 결산기별 제출자료

-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2. 회사는 은행이 회사의 관계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관리단의 파견)

은행은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회사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자금관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내용 불이행 시 조치 등)

1. 회사가 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회사가 은행이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은행은 아래 각항의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조건 완화의 중단: 금융조건완화(기한연장 등 금융지원)를 중단하고, 기 완화된 금융조건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당초의 금융조건으로 전환한다.

② 기 취급여신의 기한이익 상실 및 회수

③ 매각대상 자산 일체의 임의처분

2. 회사가 본 약정사항 중 일부라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기업구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하기로 한다.

제14조(시행일 및 존속기한)

1. 본 약정서의 시행일은 이 약정의 체결일로 한다.
2. 본 약정서의 효력기한은 '별지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확약서' 내용의 이행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지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확약서

B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당사는 첨부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따라 일정별 세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경영정상화 계약서 주요내용>

가. 2016 상반기까지 불용자산 처분 등

- N 사무실 임대 전환하여 경비 절감
- O 아파트 임대 및 P 매각 진행

나. 2016년 상반기 중 창고운영 및 기존 도소매 영업 정상화

다. 2016년 상반기까지 유상증자 실시(기존 6억에서 증자 후 19억, 전환사채 3억 별도)

라. 경영목표 달성

- 아래와 같이 2016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구분	판매량	창고임대율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15,000톤	80%	150억 원	12억 원

아. B에 대한 채권자 은행들(E, Q은행, [redacted]은행, R은행, S은행, 신용보증기금) 중 주채권은행인 E(총 채권액 68억 4,000만 원, 62.62%)은 2016. 2. 23. Q은행(총 채권액 8억 4,500만 원, 7.74%), 기업은행(총 채권액 11억 8,300만 원, 10.83%), R은행(총 채권액 5억 1,000만 원, 4.67%), S은행(총 채권액 7억 원, 6.41%), 신용보증기금(총 채권액 8억 4,500만 원, 7.74%)에 "B 제1차 Fast-Track 프로그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서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소집통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의거 B의 제1차 Fast-Track 프로그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개최(서면결의)하오니 결의서 제출기일(2016. 2. 26.)까지 당행에 송부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 B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B은 그 소유의 불용자산인 아파트의 매각에 관해 E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채권자 은행들의 관리 · 감독을 받게 되었다.

자. 피고 [redacted]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B의 부동산,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8. 5. 28.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세대상	세목	구분	세액(원)
부동산	취득세	본세	106,046,490[3]
		일반무신고가산세	21,209,290[4]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70[5]
	농어촌특별세	본세	10,604,640[6]
		납부불성실가산세	2,548,290[7]
차량	취득세	본세	1,184,940[8]
		일반무신고가산세	236,980[9]
		납부불성실가산세	284,740[10]

차. 피고 [redacted]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3) = {3,288,802,966원(B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토지 금액) + 6,456,326,294원(위 재무상태표상 건물 금액 중 [redacted]시 소재 부분 금액)} × 0.5441(원고의 주식소유비율) × 0.02,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 106,046,490원(본세) × 0.2

5) = 106,046,490원(본세) × 0.0003 × 801일

6) = 106,046,490원(취득세 본세) × 0.1

7) = 10,604,640원(본세) × 0.0003 × 801일

8) = 108,889,915원(B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차량운반구 금액) × 0.5441(원고의 주식소유비율) × 0.0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이유로 원고가 B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8. 8. 1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이라 하고,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과세대상	세목	구분	세액(원)
부동산	취득세	본세	15,330,460[11]
		일반무신고가산세	3,066,090[12]
		납부불성실가산세	4,024,240[13]
	농어촌특별세	본세	1,533,040[14]
		납부불성실가산세	402,420[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3, 16 내지 19, 21, 22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 중 23,135주의 실질적인 권리자

가) B의 투자자들은 2016. 1. 5. 실질적인 투자지분은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르고, D의 2억 5,000만 원 현물출자 분인 J은 자본증자나 흑자가 이루어져 평가가 가능

9) = 1,184,940원(본세) × 0.2

10) = 1,184,940원(본세) × 0.0003 × 801일

11) = {351,769,684원(B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토지 금액 중 성남시 소재 부분 금액) + 1,057,021,544원(위 재무상태표상 건물 금액 중 성남시 소재 부분 금액)} × 0.5441(원고의 주식소유비율) × 0.02

12) = 15,330,460원(본세) × 0.2

13) = 15,330,460원(본세) × 0.0003 × 875일

14) = 15,330,460원(취득세 본세) × 0.1

15) = 1,533,040원(본세) × 0.0003 × 875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한 시점까지 출자전환을 연기하며, 유상증자 후 D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의 J 포함 지분율인 31.61%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나) 따라서 투자자간에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합의한바와 같이 47.42%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156,865주(= 330,800주 × 47.42%)에 불과하고, 나머지 23,135주(= 180,000주 - 156,865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는 D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B의 운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2016. 1. B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B의 핵심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고 경영 및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 사건 프로그램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2016. 1. 내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당초 투자협약과 달리 일부 투자자가 이탈하고 투자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B이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고가 부득이하게 추가로 출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B의 주요한 경영상 결정과 자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E에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약정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은 1차 유상증자 직후 적극적으로 외부투자자를 모집하여 2차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남으로써 원고가 B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은 약 1년 반에 불과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특별약정에 따라 불용자산을 매각했고, T 등 외부투자자들을 추가로 유치하여 2017. 8. 2차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채권자들의 승인을 얻어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라) B의 경영 및 주요자산의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B에 대한 채권자 은행들이었다.

마) 원고를 비롯한 B의 주주들은 주식취득 후 현재까지 B의 채권자 은행들이 사전에 결정하거나 재가한 사안(2017년 2차 유상증자 등)의 실행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16]

1) 이 사건 주식 중 23,135주의 실질적인 권리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

16) 원고는 피고 화성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으나,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심판청구 및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규정된 제소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일은 2018. 8. 10.이고,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지나지 않았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30.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2019. 1. 29.은 그때부터 90일 이내이다. 달리 원고가 2019. 1. 29.보다 90일 전에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참조).

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C가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투자금액과 지분은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르되, 채권단의 유상증자 입증요구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자본잠식상태로 현 관련법규상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D의 2억 5,000만 원 현물출자 분인 J은 자본증자나 흑자가 이루어져 평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가 가능한 시점까지 출자전환을 연기하고, 유상증자 후 D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의 J 포함 지분율인 31.61%로 인정하며, 향후 출자전환이 영구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2016. 1. 5.자 유상증자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3,135주에 관한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D이 위 23,135주에 대하여 실질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B에 현금 9억 원을 출자하여 B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180,000주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D이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D이 자신의 J에 대한 지분을 현물출자하지 않았음에도 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D의 B에 대한 주식 지분을 31.61%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례적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있은 조세심판에서나 이 사건 소장 및 2019. 5. 16.자 준비서면까지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19. 7. 10.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위 주장을 하면서 위 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1. 5.에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

(3) D이 위 23,135주에 대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 여부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약정 체결과 B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램 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B의 운영을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 B의 과점주주가 된 것은 B의 회생을 위해 원고가 추가로 출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B에 현금 9억 원을 출자하여 B의 주식 185,567주(47.42%)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B에 출자한 돈은 9억 원이다], D이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약정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J 지분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B의 발행주식 총수가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에서 예정한 391,315주(= 원고 185,567주 + D 123,711주 + H 41,237주 + C 40,800주)에서 330,800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이 54.41%(= 180,000주/330,800주 × 100)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2252 판결 참조), 원고가 D의 현물출자 불이행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약정에 의하면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은 B을 대리하여 매각대상 자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B은 기본재산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에 사전 통보하고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4조 제3항), B은 경영정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 관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하고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수주현황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E에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E은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B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제7조) 등 E이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B의 경영에 상당한 관여나 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B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개시로 인해 B은 E을 비롯한 채권자 은행들의 관리 ·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E을 비롯한 B의 채권자 은행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이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별약정에 E이 B의 경영진 교체 및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B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B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B의 운영 지배가 이 사건 특별약정으로 인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갑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B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토지 금액 3,288,802,966원 중 351,769,684원은 성남시에, 2,932,430,000원은 [redacted]시에 각 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나머지 4,603,282원(= 3,288,802,966원 - 351,769,684원 - 2,932,430,000원)은 취득세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B이 소유한 [redacted]시 소재 부동산의 취득간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산출한 [{3,288,802,966원(B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토지 금액} + 6,456,326,294원(위 재무상태표상 건물 금액 중 화성시 소재 부분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 0.5441(원고의 주식소유비율)]이 아니라 [{2,932,430,000원(위 재무상태표상 토지 금액 중 화성시 소재 부분 금액) + 6,456,326,294원} × 0.5441]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 화성시장의 부과처분 중 과세대상이 부동산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다.

과세대상	세목	구분	세액(원)
부동산	취득세	본세	102,168,440[17]
		일반무신고가산세	20,433,680[18]
		납부불성실가산세	24,551,070[19]
	농어촌특별세	본세	10,216,840[20]
		납부불성실가산세	2,455,100[21]

그러나 피고 [redacted]시장이 위 재무상태표상 토지 전체가 [redacted]시에 소재한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redacted]시장의 부과처분 중 과세대상이 부동산인 부분 가운데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초과부분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성남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17) = (2,932,430,000원 + 6,456,326,294원) × 0.5441 × 0.02
18) = 102,168,440원(본세) × 0.2
19) = 102,168,440원(본세) × 0.0003 × 801일
20) = 102,168,440원(취득세 본세) × 0.1
21) = 10,216,840원(본세) × 0.0003 × 801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창구

판사 최윤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6. 3., 2014. 11. 19., 2015. 12. 29.>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9.>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5. 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 1. 1.>

나. 삭제 <2013. 1. 1.>

다. 삭제 <2013. 1. 1.> 끝.